

◆ 꿈을 키우는 학교 · 창의성을 기르는 학교 ·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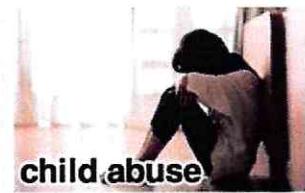
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



교무실 840-9720 생활안전부 840-9757

사이 4E 좋은 안전교육자료

[주간 안전 신호등 ●]



“아동학대 위험 / 사전에 예방해요”

[알아두면 좋은 안전교육자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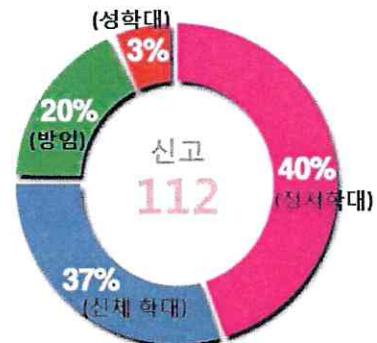
♣ 아동학대란?

“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” - 아동복지법 제3조7-

♣ 아동학대 유형 - 발견즉시 신고

- 신체 학대(폭력 행사)
 - 명이나 상처가 있을 때
 -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
- 정서 학대(인격 무시 언어폭력, 비교, 편애)
 - 언어적,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을 받을 때
 - 언어폭력, 심한 비교, 가족내 따돌림, 집 밖으로 쫓아 내는 행위
- 성 학대(성적 접촉)
 -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
- 방임(방치, 유기)
 - 아동을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시키거나
 - 교육,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

♣ 아동학대 유형 사례



♣ 아동학대 신고 의무란?

↳ 교사 직군, 의료인 직군, 시설종사자 공무원 직군 등은 아동학대 발견즉시 전문기관 및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아동이란? 만 18세 미만(고등학생도 포함)

※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이야기 해봐요]

* 전북안전매뉴얼(집)에서 '아동, 학대'를 검색하여 동영상으로 배워요 ^^

아동학대 신고 후 피해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

2021. 3. 9.

전 북 제 일 고 등 학 교 장

